

전략 · ESG 위원회 규정

2025. 3. 26.



(제정 : 2021. 3. 26.)

(1 차 개정: 2021.5.27.)

(2 차 개정: 2022.3.25.)

(3 차 개정: 2025.3.26.)

1 장 총 칙

제 1 조 【목 적】

이 규정은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설치한 전략·ESG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【적용범위】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, 지배구조헌장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【역 할】

위원회는 전략(Strategic)·환경(Environment)·사회적 가치(Social Value)·회사의 지배구조(Corporate Governance)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 사항과 회사의 재무적·비 재무적 Risk 를 검토하고 토의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【구 성】

②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2 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며,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제 5 조 【위원장】

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당해 위원 선임을 위한 회의는 연장자인 위원이 주재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【소집권자】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5 조 제 3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위원장은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 7 조 【소집절차 등】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, 안건, 장소 등을 정하여 개최일 3 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④ 위원회 위원이 아닌 각 이사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검토 및 토의사항에 대하여도 제 3 항 내지 제 4 항을 준용한다.

제 8 조 【검토 및 토의사항 등】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토의할 수 있다.

1. 회사의 중장기 전략
2. 회사의 연간 경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
3. 회사의 중요한 개별 투자안건
4.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5.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실천 방안
6. 기업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활동
7. 회사의 재무적·비재무적 Risk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

8. 기타 회사의 전략, 평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사항
9.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현안 등 위원장 또는 회사가 토의를 요청한 사항
10. 제 1 호 내지 제 9 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9 조 【관계인의 의견청취 등】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1.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자료 제공 요청
2. 외부인사의 회의 출석 및 관련 의견 진술 및 청취
3. 제 1 호 및 제 2 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10 조 【이사회 보고의무】

위원회는 검토 및 토의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을 취합하여 이사회에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【의사록】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위원과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2 조 【사무국 등】

이사회 담당 사무국에서 위원회의 운영사무를 담당하되, 위원회에서 다루는 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은 안전의 내용에 따라 전략기획업무 주관부서, 재무/회계 관련 부서, 환경/안전/보건업무 관련 부서, 사회적가치(SV) 추구업무 주관부서 등에서 담당한다.

제 13 조 【규정의 개폐】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(2021. 3. 26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5. 27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 년 5 월 27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3. 25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 년 3 월 25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(2025. 3. 26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 년 3 월 26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